

자기소개서

주의사항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본인이 직접 작성이라며 대리 작성, 허위 작성 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 * 1. 본사에 지원한 구체적 동기는 무엇인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500자)

1. 본사에 지원한 구체적 동기는 무엇인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500자)

현재 글자수 : 공백 포함 0자 공백 제외 0자

글자수는 250이상 입력해주세요.

- * 2.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했던 경험과 당시 본인이 업무 우선순위를 설정한 기준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800자)

2.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했던 경험과 당시 본인이 업무 우선순위를 설정한 기준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800자)

현재 글자수 : 공백 포함 0자 공백 제외 0자

글자수는 250이상 입력해주세요.

- * 3.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그 인물로부터 배운 점 및 내 삶이 변화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800자)

3.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그 인물로부터 배운 점 및 내 삶이 변화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800자)

현재 글자수 : 공백 포함 0자 공백 제외 0자

글자수는 250이상 입력해주세요.

- * 4.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회사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회사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원은 무엇인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800자)

4.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회사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회사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원은 무엇인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800자)

현재 글자수 : 공백 포함 0자 공백 제외 0자

글자수는 250이상 입력해주세요.

- * 5.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과 그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800자)

5.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과 그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글자수 : 공백 포함 0자 공백 제외 0자

글자수는 250이상 입력해주세요.

본인은 지원서 상의 모든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며, 차후 지원서 상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인사청탁과 관련될 경우 합격 또는 입사가 취소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3월 13일 / (인) 동의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